주간 관세무역정보 vol.2194 2026.9.7.



고성능 AI·반도체 장비도 전략물자 9월부터 수출허가 받아야

[이주의 초점]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9월 1일 시행
수출자 서약서는 폐지 (4p)

[위클리뉴스]
중소 수출기업 키운다… 물류·통관·인증까지 통합 지원
재경부,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덤핑방지관세
최대 19.17% 부과 결정
한·영 FTA 개선 협정문 공개… 원산지 기준 완화 (6p)

[오피니언: 미국]
까다로워진 미 통관 검증…
CBP 정보제공요청(CF-28) 대응 핵심은 (11p)

[판례 동향]
합작수산물 관세감면 요건에 관한 판례해설 (20p)

[품목분류 동향]
'설탕과자vs조제 식료품' 설탕 대체제 '소르비톨' 함유 사탕의 HS CODE (30p)

[일본 관세 리포트]
일본 세관, 전자상거래 급증에 2030년 세관행정 대전환 추진 (32p)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AI 생성 이미지

발 행 인 백형민
편 집 인 남성훈

총 괄 김민정

취 재 강보람 aorigaski@kctdi.or.kr
김성은 ray1023@kctdi.or.kr
김다솔 kds5817@kctdi.or.kr

마 케 팅 김진우 kjw@kctdi.or.kr

디 자 인 경성문화사

발 행 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 행 일 2026년 9월 7일(통권 제2194호)
I S S N 2799-7251
e-ISSN 2799-726X
등록번호 서울 다07117(2005.5.20.)
주 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22 6층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사업실
홈페이지 www.kctdi.or.kr
S N S blog.naver.com/kctdi1964
www.instagram.com/kctdi_library

* 본지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지에서 제기한 의견 등은 필자가 소속한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C O N T E N T S

이주의 초점

04 고성능 AI 집적회로·반도체 장비도 전략물자···
9월부터 수출허가 받아야

06 Weekly News

오피니언

11 **시선, 미국 통관**

이 정 운(Pierce Lee) Crowell & Moring LLP(미국 변호사)

까다로워진 미 통관 검증
CBP '정보제공요청(CF-28)' 대응 핵심

관세행정실무해설

18 **질의응답사례**

설탕·정제소금 등 첨가물이 함유되지 않은
건조한 명태머리의 HS Code

판례동향

20 **관세판례해설**

합작수산물 관세감면 요건에 관한 판례

품목분류동향

30 **세번 바로잡기**

'설탕과자vs.조제 식료품' 설탕 대체제 '소르비톨'
함유 사탕의 HS Code

일본 관세 리포트

32 일본 세관, 전자상거래 급증에 2030 대전환
추진

고성능 AI 집적회로·반도체 장비도 전략물자··· 9월부터 수출허가 받아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9월 1일 시행··· 수출자 서약서는 폐지

고성능 인공지능(AI)용 집적회로와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 등이 전략물자 수출통제 대상에 추가된다. 고에너지 이차전지는 통제 기준이 완화되고, 전략물자 수출허가 신청 때 제출하던 '수출자 서약서'는 폐지된다.

산업통상부는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최신 합의사항을 반영하고 수출허가 신청서류를 간소화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바세나르체제(WA, Wassenaar Arrangement), 핵공급국그룹(NSG, Nuclear Suppliers Group) 등 전략물자의 수출을 통제하기 위한 다자 협의체인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서 결정된 전략물자 개정사항 80여 건이 반영됐다.

■ 고성능 AI 집적회로 통제기준 변경··· 반도체 제조장비도 추가

최근 산업용뿐 아니라 군사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dual-use) 품목에 대한 국제사회의 수출통제가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으로 넓어지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기존 통제번호 3A901~3A903이 3A501~3A504 체계로 재편되면서 품목별 통제번호가 변경되고 반도체 관련 통제대상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휘발성 메모리를 제외한 다른 집적회로와의 입출력 양방향 전송속도 합계가 600Gbyte/s 이상이면서 '총 처리성능'이 6,000 이상인 집적회로를 통제했으나, 개정 고시에서는 3A501.a.16을 신설해 전송속도 요건을 삭제하고 '총 처리성능 6,000' 이상을 기준으로 삼았다.

특정 사양의 반도체 제조장비도 통제 대상에 추가됐다. 법무법인 태평양 김지이나 변호사는 9월 1일 관련 뉴스레터를 통해 기존 3B901~3B904가 3B501~3B504로 재편되면서 반도체 제조장비 관련 통제체계가 개편됐고 신규 추가 품목이 있다고 전했다. 추가된 장비는 ▲실리콘(Si) 또는 실리콘-게르마늄(SiGe)의 에피택셜 성장 장비(3B501.a.1), ▲기존 3B001.f.1에서 통제되지 않던 리소그래피 장비(3B501.f), ▲EUV 리소그래피용 펠리클(3B501.m), ▲반도체 제조 증착장비(3B501.n)다.

일부 품목은 규제가 완화됐다. 고에너지 이차전지(3A001.e.1.b)는 20℃에서 에너지 밀도가 '350Wh/kg을 초과하는 2차 셀'에서 '500Wh/kg을 초과하는 2차 셀'로 통제 기준이 완화됐다. 기존 '보툴리눔 독소'(1C351.d.3)는 '보툴리눔 신경독소'로 명확히 했다.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주요 개정사항 ●

	개정 전	개정 후
통제 강화	**AI 집적회로 3A901~3A903** [3A903] 휘발성 메모리를 제외한 다른 집적회로와의 입출력 양방향 전송속도 합계가 600Gbyte/s 이상이고 '총 처리성능'이 6,000 이상인 집적회로	**AI 집적회로 3A501~3A504로 재편** **[3A903 폐지]** **[3A501.a.16 신설]** '총 처리성능'이 **6,000** 이상인 집적회로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 3B901~3B904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 3B501~3B504로 재편** **[3B501.a~n 신설]** 특정 사양의 반도체 제조용 **노광·식각·증착장비** 등
통제 완화	**고에너지 이차전지** [3A001.e.1.b] '2차 셀'로 20°C에서 '에너지 밀도'가 **350Wh/kg**을 초과하는 것	**고에너지 이차전지** [3A001.e.1.b] '2차 셀'로 20°C에서 '에너지 밀도'가 **500Wh/kg**을 초과하는 것
	[1C351.d.3] 보툴리눔 독소	[1C351.d.3] 보툴리눔 **신경**독소
신청 간소화	수출허가 신청 시 '수출자 서약서' 제출 의무	수출허가 신청 시 **'수출자 서약서' 제출 폐지** 수출자 의무사항은 고시 본문으로 이관
서식 정비		전문판정신청서, 포괄수출허가신청서, 최종사용자 서약서 등 용어·작성 정비

자료: 산업통상부, 정리: 주간 관세무역정보

■ '수출자 서약서' 폐지해 서류 부담 완화

수출허가 신청서류도 간소화됐다. 기존에 제출해야 했던 '수출자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수출허가 신청서류에서 제외·폐지하는 대신, 해당 서약서에 포함됐던 서약 내용은 고시 분문에 '수출자의 의무' 신설 조항(제18조의3)으로 이관했다.

수출기업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전략물자 수출입 과정에서 사용하는 서식도 손질했다.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판정받기 위한 '전문판정신청서'를 비롯해 '포괄수출허가신청서', '최종사용자서약서', '수입목적확인신청서', '최종수하인진술서' 등의 용어와 작성방법을 정비했다. 포괄수출허가신청서의 경우 '목적지국가'와 '최종목적지국가'를 구분해야 하는데, 목적지국가에는 최종수하인이 소재하는 국가를, 최종목적지국가에는 최종사용자가 소재하는 국가를 기입한다. 이에 따라 물품의 최종목적지를 기준으로 수출지역과 적용되는 허가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으로 집적회로 및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통제가 확대된 만큼 관련 기업은 자사 제품이 통제 대상인지 재검토해야 한다. 특히 AI 집적회로의 경우 고성능과 고대역폭을 모두 갖춘 첨단 컴퓨팅 반도체에서, 총 처리성능 6,000 이상인 고성능 연산 반도체 자체로 통제 범위가 확대됐다.

김 변호사는 "기존 통제 대상이 아니던 제품도 이번 고시 개정으로 통제 대상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 AI 가속기, GPU 등 다양한 제품군의 총 처리성능 기준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성은 기자 |

중소 수출기업 키운다··· 물류·통관·인증까지 통합 지원

2030년 수출액 1,800억달러 목표로 4대 혁신 전략 발표

정부가 중소기업 수출액을 2028년 1,500억달러, 2030년 1,800억달러까지 확대하기 위해 성장 유망기업 500개사를 집중 육성한다. 수출 도전·중단기업 2,000개사의 해외 진출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3일 제13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와 '중소기업 수출 4대 혁신 전략'을 논의했다. 기업·품목·국가·정책 등 4대 분야의 수출지원 방식을 개편해 중소기업 수출을 구조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2025년 중소기업 수출액은 전년보다 8.1%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인 1,200억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보다 11.6% 늘어난 640억달러로 반기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다.

● 중소기업 수출 4대 혁신 전략 ●

전략 1 **신규 수출·고속성장 촉진**	글로벌 스케일업 500 신설로 고속성장 지원 수출저변 확장을 위한 '수출 ON 2000' 운영
전략 2 **품목 다양화·맞춤형 지원**	품목·방식 다양화를 통한 K-브랜드의 글로벌 확산 산업재 유망기업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 3 **정상외교 기반 신흥시장 개척**	국가 간 협력 채널 기반 신흥시장 진출 활성화 (인도, 유럽, 싱가포르, 몽골, 브라질 등)
전략 4 **중소 글로벌화 정책 고도화**	수출정책 지원 기반 정비, 지원·분석 플랫폼 통합 중소기업 현지 진출·협력 거버넌스 고도화

정부는 2027년부터 '글로벌 스케일업 500'을 신설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수출기업 500개사를 선발한다. 기업별 수출 로드맵을 마련하고 수출바우처와 해외 인증 등을 다년간 통합 지원한다. 수출바우처에는 해외 공급망 조사와 원부자재 샘플 도입 등을 지원하는 소싱 분야도 추가한다.

'수출 ON 2000'을 통해 청년창업가와 소상공인, 지역기업, 수출 재도전기업 등 2,000개사의 수출기업 전환도 지원한다. 수출 경험과 상품화, 온라인 플랫폼 입점, 해외 공동진출, 실패 원인 진단 등 대상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품목별로는 패션·푸드·뷰티 디바이스 등 소비재 분야를 'K-브랜드 전략품목'으로 육성한다. 산업재·테크 분야에서는 해외 산업정책과 공급망 변화를 고려해 'K-Tech 전략품목' 기업 500개사를 발굴하고 현지 실증과 기술·제품 고도화, 바이어 매칭, 수출금융 등을 지원한다.

물류·통관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12월 인천공항에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를 설립하고 2027년부터 비수도권 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내륙 운송을 지원한다. 해외에서 반품된 물품을 한 업체가 모아 재수입할 경우 면세에 필요한 서류를 건별이 아닌 1년 단위로 제출하도록 절차도 간소화한다. 해외 인증은 사전 규제 진단부터 인증 획득과 사후 지원까지 전 주기로 제공한다.

국내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해외 인증은 현재 212종에서 2028년에는 500종으로 확대한다. 신흥시장 진출을 위해 인도에 전시·창고와 현지 실증 등을 지원하는 종합거점을 구축하고, 브라질은 K-뷰티 진출과 현지 규제기관 협력을 확대한다.

정부는 수출지원사업의 신청서류를 2027년부터 통일하고 2028년에는 범부처 수출·해외진출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할 방침이다. 정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소기업 해외진출 촉진법」 제정도 올해 하반기 추진할 계획이다. | 김성은 기자 |

● 「중소기업 해외진출 촉진법」 제정(안) 주요 내용 ●

① 「중소기업진흥법」 등 4개 법률*, 9개 조문에 산재한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근거를 제정법으로 일원화
* 「중소기업진흥법」, 「판로지원법」, 「기술혁신촉진법」, 「무역거래기반법」
② 무역환경 변화 대응, 수출·해외진출 지원 등 글로벌화 정책 영역별 완결성 있는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지원수단별 근거 조문 추가
③ 체계적 정책 추진 및 수요자 편의 확대를 위해 통합공고 등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정책의 기능 강화
④ 데이터 기반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중소기업 서비스 수출, 해외직접투자 DB 제공·분석 등을 위한 근거 마련

재경부,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덤핑방지관세 최대 19.17% 부과 결정

재정경제부가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아크릴산 부틸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덤핑 수입에 따른 국내 산업의 피해를 줄이고 공정한 시장 경쟁환경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관세 부과는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한 반덤핑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결정됐다. 해당 물품 수입 시 국내 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입증됨에 따라 8.32~19.17%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재경부는 9월 16일까지 관련 재정경제부령을 입법예고하고, 28일부터 향후 5년간 확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 덤핑방지관세 부과결정 내용 ●

부과대상 물품	대상 국가	관세율	부과기간
아크릴산 부틸 (HSK 제2916.12-3000호)	중국	8.32~19.17%	2026.9.28.~2031.9.27.

아크릴산 부틸은 점·접착제와 특수 플라스틱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 원료다. 국내 시장은 2024년 기준 약 1,000억원 규모로 형성돼 있으며, 이 가운데 중국산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7%다.

정부는 이번 관세 부과로 중국산 제품의 저가 공세에 따른 국내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시장 내 가격 경쟁이 전보다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 김다솔 기자 |

한·영 FTA 개선 협정문 공개··· 원산지 기준 완화

한국과 영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자동차 원산지 인정 기준이 완화되고, 배터리는 역외산 부분품을 사용해도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의약품과 화장품, 플라스틱 등 주요 수출품의 원산지 기준도 완화된다.

산업통상부는 2025년 12월 타결된 한·영 FTA 개선 협정문의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9월 1일 공개했다. 관세와 서비스 등 10개 장을 개선하고 공급망, 성평등, 반부패 등 13개 장과 부속서를 신설했다.

우선 기업의 FTA 활용을 높이기 위해 가공 농수산물과 공산품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완화했다. 다만 신선 농수산물은 국내 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해 현행 기준을 유지했다.

구체적으로, 관세율이 10%인 자동차의 역내부가가치 기준은 55%에서 25%로 낮아진다. 의약품과 화장품, 플라스틱 등 관세율이 최대 8%인 품목은 부가가치 기준을 기존 50~75%에서 40%로 완화했다. 관세율이 2%인 배터리는 역외산 부분품을 사용하더라도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면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원산지 규정 완화로 국내 기업의 영국 시장 접근성과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상품 분야에서는 수출입 허가 관련 규범을 강화하고 재제조품 교역과 수리·개조를 원활하게 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주요 수출입품목의 교역 안정성을 높이고 제품의 순환관리 관련한 비관세장벽에 대응한다는 취지다.

원자재 수출통제 등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채널도 협정에 포함했다. 양국은 2022년 체결한 핵심 공급망 협력 업무협약(MOU)과 공급망 대화를 토대로 관련 협력을 제도화한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영국이 체결한 양자 FTA 가운데 처음으로 시청각 서비스를 협정 적용 범위에 포함했다. 온라인 게임 서비스도 개방해 국내 게임기업의 영국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협정문을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하고 9월 11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 관계부처·전문가 검토를 거쳐 한글본을 확정한 뒤 외교부와 법제처 심사, 영국과의 협의 및 정식서명을 진행할 예정이다.

| 김성은 기자 |

농식품부, 홍콩과 검역협상 타결로 한우 수출 규제 완화

홍콩정부와 한우 수출 검역조건 개선 협상이 완료됨에 따라 수출 제한지역이 축소되는 등 가축질병 발생으로 인한 수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홍콩 식품환경위생서와의 협의를 거쳐 한우 수출에 적용되는 검역기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기준은 2026년 9월 1일부터 적용되며, 구제역 등 가축질병이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수출 제한 범위가 이전보다 대폭 줄어든다.

구체적으로 가축질병이 발생하면 수출 제한지역이 기존에는 '도' 단위였으나 '시·군'으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특정 시·군에서 가축질병이 발생하더라도 같은 도 내 다른 시·군 지역에서 생산된 한우는 수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기존 검역기준에서는 구제역이 확인되면 같은 도에서 생산된 한우도 마지막 발생일을 기준으로 1년간 수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치로 지난 2월 및 7월 구제역 발생 이후 홍콩 수출이 막혀 있던 경기·경북산 한우도 다시 현지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2025년 경기·경북산 한우의 홍콩 수출량은 11톤, 수출액은 68만달러로 전체 한우 홍콩 수출량의 22%를 차지했다.

● 한우·한돈 수출량과 수출액(검역기준) ●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1~7월
한우	54톤 / 375만달러	71톤 / 465만달러	52톤 / 328만달러
한돈	148톤 / 142만달러	79톤 / 120만달러	102톤 / 160만달러

농식품부는 이번 합의 내용을 전국 지방정부, 한우업계, 생산자단체 등에 안내하고 현장 검역 지원을 강화해 수출 재개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 김다솔 기자 |

불법수입 생과실 양도·유통도 처벌···「식물방역법」 개정안 12월 17일 시행 예정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국내에 불법수입된 생과실과 열매채소류 등을 유통하는 행위까지 제재할 수 있도록 「식물방역법」을 개정한다. 9월 3일 검역본부에 따르면 개정안이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되면 불법수입된 금지품을 양도·유통 과정에 가담한 사람도 처벌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지품의 불법수입부터 국내 유통까지 전 과정에 걸친 수사와 단속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검역본부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국내 수입이 금지된 베트남산 생과실과 열매채소류를 불법으로 수입해 국내에 유통·판매한 일당을 적발한 사실도 전했다.

● 불법수입 후 SNS 유통 적발된 사례 ●



(좌) SNS 라이브 방송으로 판매, (우) 베트남산 구아바·롱간·람부탄·생고추 등 불법수입된 금지품(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조사 결과, 이들은 수입·도매·소매로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배해 약 6개월 동안 금지품을 국내에 수입·유통을 공모한 것이 밝혀졌다. 이들은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여행객인 일명 '포터'를 모집해 금지품을 여행용 가방과 기내 수화물로 나눠 수입하도록 하고 이후 국내에서 SNS로 판매했다. 검역본부는 여행객을 동원한 유사한 금지품 불법수입 사례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 김다솔 기자 |

관세청 내년 예산 7,284억원··· 마약 차단·AI 혁신 집중

관세청이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385억원 늘어난 7,284억원으로 편성했다. 마약 밀반입 차단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출입 위험관리, 현장 맞춤형 연구개발(R&D)에 투자를 집중한다.

관세청이 9월 1일 공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5.6%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인건비 4,076억원, 주요 사업비 2,841억원, 기본경비 367억원으로 구성됐다.

우선 마약 단속망 구축에 213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상반기 국내 유입 목적의 마약 적발 실적은 767건, 1,007kg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의 개별 판독센터를 통합하고 우범 수하물을 2명이 동시에 판독하는 '엑스레이(X-ray) 복수판독통합센터'를 설치하는 데 52억원을 투입한다. 3D 엑스레이 검색기와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등 첨단 검색장비 확충에는 46억원, 신종 마약류 정밀분석 장비 도입에는 21억원을 배정했다.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불법물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노후화된 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도 94억을 들여 신축한다. 새 검사센터는 국제우편물의 반입부터 분류·반출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하고, 검사자의 마약 노출을 막기 위한 전용 검사실도 갖춘다.

관세행정의 AI 전환에는 65억원을 투입한다.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과 연계해 물품별 공급망 위험도를 분석하는 '불법물품 AI 선별 모델' 고도화에 18억원을 배정했다.

수출입가격 왜곡과 불법 외환거래를 조사하기 위해 과세·수사 자료를 AI로 통합 분석하는 시스템도 26억원을 들여 구축한다. 법무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보유한 위험정보를 연계해 수입물품의 반입부터 유통까지 점검하는 AI 모니터링 시스템에는 14억원을 투입한다. 관세청 모바일 앱에는 민간인증과 간편납부, AI 상담 등의 기능을 추가한다. 관세청은 수출입 관계기관이 불법·불량·유해물품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관세법」 개정도 추진하며, 그 밖에 현장 맞춤형 연구개발로 업무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 김성은 기자 |

※ 주간 관세무역정보 '위클리뉴스' 코너에서는 관세무역 관련 주요 뉴스를 요약 정리해 전해드립니다. 기사 전문 및 더 자세하고 다양한 관세무역 뉴스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www.kctdi.or.kr) > 관세무역동향**에서 매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선, 미국 통관

미국 워싱턴 D.C.에서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국제통상 전문, 이정운 변호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관세 정책 변화와 기업의 대응 전략을 짚어본다.

까다로워진 미 통관 검증 CBP '정보제공요청(CF-28)' 대응 핵심

관세 산정근거·거래자료 연결해 입증해야



이 정 운(Pierce Lee) | Crowell & Moring LLP(미국 변호사)

미국 통관환경의 변화와 정보제공요청(CF-28)

최근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으로부터 통관과 관련해 보다 상세한 자료를 요구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상 원산지 검증,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알루미늄 관세와 관련된 신고 내용, 그리고 중국 등 제3국산 원재료나 부품을 사용해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의 원산지 등이 대표적인 쟁점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게 되는 절차 중 하나가 CBP Form 28, 즉 정보제공요청서(CF-28, Request for Information)다. CF-28은 새로운 제도는 아니다. CBP는 오래전부터 수입신고 내용만으로 정확한 품목분류, 가격, 원산지 또는 기타 통관요건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수입자에게 추가적인 정보와 자료를 요청하기 위해 CF-28을 사용해 왔다.

다만 최근 달라진 것은 CF-28이라는 제도 자체라기보다 기업이 CBP에 입증해야 하는 사실관계가 훨씬 복잡해졌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미 FTA 원산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완제품에 적용되는 원산지 기준에 따라 원재료별 생산기록뿐 아니라 공급단계별 거래를 입증하는 주문서, 거래명세서, 배송자료, 송장, 대금지급 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알루미늄 관세의 경우에는 철강 또는 알루미늄 함량가치의 산정방법과 해당 산정에 사용된 입증자료가 문제가 될 수 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특히 중요하다. 미국 자회사를 통해 수입하는 경우에는 미국 자회사가 직접 CF-28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미국 고객사가 수입자인 경우에도 CBP가 실제로 요구하는 자료는 한국 수출자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사로부터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기록을 충분히 보관하고 있지 않거나 고객사가 기대하는 수준의 입증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면 향후 거래관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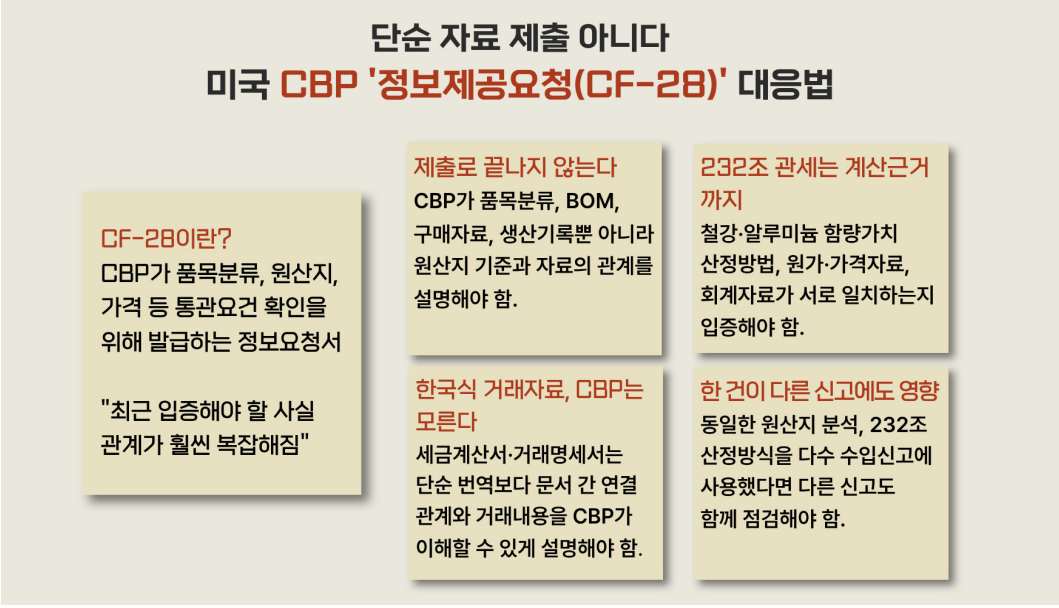

편집: 주간 관세무역정보

CF-28은 단순한 자료제출 요청이 아니다

CF-28이라는 명칭이 정보요청서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흔히 CBP가 요청한 자료를 모두 찾아 제출하면 대응이 끝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무상 이러한 접근은 상당한 위험이 있다.

실제 요청문을 보면 CBP가 특정 서류를 열거하면서도, CBP가 확인하려는 사항, 예를 들어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기타 모든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CF-28 대응에서 중요한 점은 CBP가 열거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CBP가 확인하려는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CBP가 한·미 FTA 원산지를 검증하기 위해 CF-28을 발급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해당 CF-28에는 자재명세서(BOM, Bill of Materials), 원재료 구매 송장, 생산기록 등 몇 가지 자료만 명시돼 있고, 그 밖에 원산지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기타 모든 자료를 제출하도록 적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회사가 명시적으로 열거된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고 해서 해당 제품이 한·미 FTA상 한국산이라는 점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적용되는 원산지 기준과 제출자료 사이의 관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면 원산지 검증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원산지 검증에 대응하려면 먼저 해당 완제품에 어떤 한·미 FTA 원산지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해당 기준이 특정 세번변경기준을 요구한다면 비원산지 재료의 품목분류와 완제품의 품목분류를 비교해 필요한 세번변경이 발생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역내가치비율이 요구된다면 적용되는 계산방법과 각 수치의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자재명세서, 공급업체 원산지 확인서 및 구매자료가 이러한 분석의 어느 부분을 입증하는지도 명확하게 연결해야 한다.

특히 공급망이 여러 단계 존재하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 한국 생산자가 A업체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하고, A업체가 다시 B업체가 생산한 재료의 원산지에 의존하고 있다면, 단순히 한국 생산자와 A업체 사이의 거래명세서나 원산지 확인서만 제공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범위까지 공급망을 추적하고, 각 단계별 주문서, 거래명세서, 배송서류, 송장, 세금계산서, 대금지급 기록 등을 통해 실제 거래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CBP 담당자가 기업을 대신해 이러한 분석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요청서에 적힌 자료를 체크리스트처럼 보고 열거된 문서만 제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관련 설명 없이 자료만 제출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CBP 담당자가 수많은 서류를 스스로 연결해 해당 제품에 어떤 원산지 기준이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그 제품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지까지 분석해 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CF-28 답변에서는 먼저 CBP가 무엇을 검증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용되는 법적 기준과 회사의 입장을 설명한 다음, 제출자료가 그 결론을 어떻게 뒷받침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성 커진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알루미늄 관세 관련 검증

최근 한국 기업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또 다른 분야는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알루미늄 관세다.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제도는 최근 적용 대상과 신고 방법이 여러 차례 변경됐다. 특히 2025년에는 상당수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에 대해 완제품 전체의 가치가 아니라 제품에 포함된 철강 또는 알루미늄의 가치를 기준으로 232조 관세가 부과됐다.

이에 따라 미국 수입자가 수입신고를 하기 위해 한국 생산자로부터 제품별 철강 또는 알루미늄 함량가치를 받아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에는 CBP가 과거에 신고된 철강·알루미늄 함량가치 산정에 대해 CF-28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CBP가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알루미늄 함량가치 산정과 관련해 CF-28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신고한 금액의 산정방법을 설명하고, 각 수치가 입증자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철강 또는 알루미늄 부품이 제품에 포함돼 있는지, 각각의 가격 또는 원가는 얼마인지, 계산에 어떤 자료가 사용됐는지, 기타 비용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신고된 금액이 회사의 회계자료와 어떻게 일치하는지를 입증해야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수입신고 시점에 어떤 법적 기준이 적용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특히 철강·알루미늄 함량가치 산정 기준은 오랫동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CBP의 관련 지침도 여러 차례 변경됐다. 따라서 동일한 가치산정 방식이라도 실제 통관시점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최근처럼 관세규정이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변경되는 상황에서는 이 문제가 특히 중요하다. 기업 내부에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신고 방법은 잘 알고 있지만, 1년 전에 어떤 방법으로 신고했는지에 대한 계산근거를 보관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CBP의 검증은 현재 거래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 수입신고에 사용된 계산방법과 입증자료도 재현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비FTA 원산지 문제도 주의해야 한다

한국 기업이 주의해야 할 원산지 문제는 한·미 FTA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비FTA 원산지 판단에도 '원산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한·미 FTA 원산지와 동일한 법적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CBP가 어떤 목적으로 원산지를 확인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에서 제품을 생산했다고 해서 미국 관세법상 모든 목적에서 자동적으로 한국산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중국산 또는 다른 국가의 원재료나 부품을 한국으로 가져와 조립 또는 가공한 후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이뤄진 공정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을 발생시켰는지 여부가 중요할 수 있다.

무역법 301조 등 미국의 일부 추가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판단에서는 일반적으로 실질적 변형 원칙이 적용된다. 즉 한국에서 이뤄진 생산을 통해 기존 재료나 부품이 새로운 명칭, 성질 또는 용도를 가진 새로운 물품으로 변화했는지를 검토하게 된다. 이러한 판단은 단순히 "한국에서 최종 조립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품과 생산공정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회사가 주장하는 원산지를 결정하는 법적 기준이 무엇인지, 한국에서 어떤 생산공정이 이뤄지는지, 핵심 부품이 어디에서 생산되는지, 각 공정이 완제품의 기능과 성질 형성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등을 설명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공정도, 생산설비 자료, 작업시간, 원재료 구매자료 및 기타

제조기록을 통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한국의 상거래 관행을 CBP가 이해할 것이라고 가정하지 않아야 한다.

CF-28 대응에서 한국 기업들이 자주 간과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한국에서는 당연하게 이해되는 상거래 또는 회계 관행이 미국 CBP 담당자에게는 전혀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거래를 입증하는 송장(Invoice)을 제출하라는 요구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제공하는 한국 기업이 많다. 이 경우 CBP가 해당 자료의 형식이나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세금계산서는 법정 양식에 따라 발행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형식이 동일하고, 일반적인 미국 기업의 송장과 달리 발행회사의 고유 양식이나 레터헤드(Letter Head, 머리글)가 없다. 이를 알지 못하는 CBP 담당자는 서로 다른 업체가 발행한 문서인데 왜 형식이 동일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한국의 세금계산서에는 특정 금액과 관련된 모든 물품이나 서비스가 개별적으로 상세하게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한국 회사의 회계담당자 입장에서는 해당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계약서, 내부 장부 등을 함께 보면 거래 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CBP 담당자는 이러한 문서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별도의 설명을 보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렵다.

이 경우 한국에서 사용되는 문서를 단순히 영어로 번역해서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왜 해당 문서가 그러한 형식으로 작성됐는지, 표시된 금액이 어떤 거래를 의미하는지, 별도의 송장이나 거래명세서, 계약서, 회계자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즉 CF-28 답변을 준비할 때는 단순히 관련 자료가 존재하는지 여부만 확인해서는 안 된다. 해당 거래를 전혀 모르는 미국 CBP 담당자가 제출된 자료와 설명만을 보고 회사가 주장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CF-28을 받으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가

CF-28을 받았다면 답변 내용뿐 아니라 절차와 기한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CF-28은 원칙적으로 미국 수입자에게 발급되며 일반적인 답변기간은 30일이다. 30일 안에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 CBP 직원에게 답변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특히 한국 공급업체의 자료나 여러 단계의 공급망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 경우에는 30일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연장이 필요하면 가능한 한 조기에 요청하고 승인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CF-28 관련 답변을 보낸 후 CBP가 회사의 설명을 받아들이면 별도의 불리한 조치 없이 검증이 종료될 수 있다. 반대로 CBP가 신고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CBP Form 29, 즉 조치통지서(CF-29, Notice of Action)를 발급할 수 있다. CF-29에서는 예정조치(Proposed Action)와 실행조치(Action Taken)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정조치는 예를 들어 CBP가 한·미 FTA 특혜관세를 부인하거나, 신고된 관세율 또는 가격을 변경하거나, 추가관세를 부과하려는 입장을 수입자에게 통지하는 단계다. 이 경우 아직 CBP의 입장을 변경하도록 추가적인 자료와 법률적 설명을 제출할 기회가 남아 있다. 일반적으로 약 20일의 답변기간이 주어지므로, CF-29 예정조치를 받았다고 해서 이를 CBP의 최종결정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반면 CBP가 최종적으로 조치를 취하게 되면 CF-29에 실행조치로 그 내용을 통지할 수 있다. 그 이후 해당 수입신고가 관세 확정(liquidation)되면 CBP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수입자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이의신청(protest)을 통해 이를 다툴 수 있다. 일반적인 이의신청 기한은 관세 확정일로부터 180일이다.

CF-28 대응, 이전 수입신고 건에도 영향

CF-28을 받으면 먼저 해당 요청과 관련된 수입신고를 확인하고 CBP가 제기한 질문에 답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그 전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검토가 필요하다. 바로 동일한 문제가 다른 수입신고에도 존재하는지 여부다.

예를 들어 CBP가 특정 제품의 한·미 FTA 원산지를 검증하고 있는데, 회사가 같은 공급업체 원산지 확인서와 동일한 원산지 분석을 이용해 지난 몇 년 동안 수백 건의 수입신고에 FTA 특혜를 신청했다고 가정해 보자. 또는 특정 철강 함량가치 산정방식을 동일한 제품의 모든 수입신고에 사용했다고 가정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건의 CF-28에 대한 답변은 사실상 다른 수입신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CBP가 한 건의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의 다른 수입신고에도 같은 처분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특정 수출자의 한·미 FTA 원산지 검증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의 다른 수입신고에 대해서도, 추가 검증없이 FTA 특혜가 부인될 수 있다.

따라서 **CBP에 답변하기 전에 해당 수입신고에 사용된 원산지 분석이나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알루미늄 함량가치 산정방법이 실제로 정확한지를 독립적으로 검토하고, 같은 방법을 사용한 다른 수입신고가 얼마나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문제가 발견된 경우에는 단순히 현재 CF-28에 어떤 답변을 할 것인지뿐 아니라 다른 수입신고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미국 통관환경에서 CF-28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CF-28 자체는 오래전부터 존재해 온 CBP의 정보요청 절차이지만, 최근에는 한·미 FTA 원산지,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알루미늄 관세,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의 원산지와 같이 기업의 생산·구매·회계자료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한 쟁점이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CF-28을 단순한 자료요청으로 이해하지 않는 것이다. CBP가 요구한 문서를 모두 제출했다고 해서 회사가 주장하는 관세처리가 정당하다는 점이 자동으로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먼저 CBP가 확인하려는 법적 쟁점을 파악하고, 적용되는 법적 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한 다음, 회사의 제품과 거래가 왜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설명하고 이를 충분한 자료로 뒷받침해야 한다.

또한 한국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상거래·회계자료의 의미를 CBP가 스스로 이해하거나, 여러 단계의 공급망 자료를 대신 분석해 회사에 유리한 결론을 도출해 줄 것이라고 기대해서도 안 된다.

결국 CF-28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은 단순한 문서 제출이라기보다 해당 수입신고의 법적·사실적 근거를 다시 검토하고 이를 CBP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입증하는 과정에 가깝다. 특히 최초 답변의 내용이 이후 CF-29와 이의신청뿐 아니라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된 다른 수입신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초기 단계부터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질의 응답 사례

본 코너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 상담한 사례 중 주요 내용만 엄선해 제공합니다. 제공하는 사례는 법률적인 유권해석이 아니며, 민원인에게 참조의 편의상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권한 있는 해석이 필요할 경우 서면으로 별도 질의하거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기 바랍니다.

관세청 기획조정관 납세자보호팀 고객지원센터

품목분류 분야

설탕·정제소금 등 첨가물이 함유되지 않은 건조한 명태머리의 HS Code를 알려주세요

'건조한 어류, 염장이나 염수장한 어류, 훈제한 어류(훈제과정 중이나 훈제 전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에 해당된다면 제0305호를 검토할 수 있으며, 세분류로 '건조한 어류[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 것으로서 염장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의 '명태(북어)'에 해당된다면 제0305.53-1000호에 분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용에 부적합한 것은 어류의 웨이스트(waste)가 분류되는 제0511.91-2000호에 분류된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보세화물 분야

보세창고에 장치한 물품의 보관기간이 경과된 후에 어떻게 처리되나요?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를 참조하면 외국으로부터 국내의 보세구역에 반입해 수입통관되지 않고 보세구역에 장치할 수 있는 기간[지정장치장은 6개월(인천공항 지정장치장 2개월), 보세창고 반입물품은 6개월(최대 1년 등)]을 초과한,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은 체화라 합니다.

보세구역 운영인은 보세구역에 반입된 해당 물품의 장치기간 만료 30일 전에 반출통고를 하며, 반출통고를 받은 수입화주가 수입 또는 반송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은 공매절차에 들어가게 되며 매각되지 않는 때에는 국고 귀속하거나 폐기처리한 후 그 비용을 청구합니다.

장치물품 폐기와 관련해 「관세법」 제160조 제1항에서 "부패·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에서 상품가치가 없어진 물품 등에 대해 세관장이 “이를 반송 또는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화주 등에게 통고한 후 폐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기와 관련한 사항은 다음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관세법**」

제160조(장치물품의 폐기) ① 부패·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되었을 때에는 그 운영인이나 보관인으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때와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외국물품 중 폐기 후에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폐기 후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화주, 반입자, 화주 또는 반입자의 위임을 받은 자나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이하 "화주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반송 또는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화주등에게 통고한 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급박하여 통고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폐기한 후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1.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2. 부패하거나 변질된 물품
3. 유효기간이 지난 물품
4. 상품가치가 없어진 물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 <후략>

■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25조(폐기기준) 법 제160조 제1항에 따른 부패, 손상, 기타의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패, 변질, 손상, 실용시효의 경과, 물성의 변화 등으로 상품가치를 상실한 경우
2. 상품가치는 있으나 용도가 한정되어 있어 실용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
3. 법 제208조에 따라 매각하려 하였으나 매각되지 아니하고 국고귀속의 실익이 없는 경우

■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46조(폐기명령 대상 등) 세관장은 법 제160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장치기간에 불구하고 화주등에게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폐기 또는 반송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급박하게 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폐기한 후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1.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2. 부패하거나 변질된 물품
3.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상품가치가 없어진 물품
4. 의약품 등으로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성분이 불분명한 경우
5. 위조상품, 모조품, 그 밖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6. 품명미상의 물품으로서 1년이 경과된 물품
7. 검사·검역기준 등에 부적합하여 검사·검역기관으로부터 적합 또는 합격 통보를 받지 못한 물품

합작수산물 관세감면 요건에 관한 판례

허 지 원 | 관세청 법무담당관실

Ⅰ. 들어가며

「관세법」 제93조 제6호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게 외국인과 합작해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중 해양수산부 장관이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해 추천하는 물품의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합작수산물에 대한 관세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령에서 정한 합작관계와 지분요건을 갖추고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는 한편,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수리 전에 관계서류를 첨부해 관세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살펴볼 판례(부산고등법원 2025.11.26. 선고 2024누21775 판결[1])는 해외합작법인을 설립해 합작수산물 관세감면을 적용받아 오던 원고가, 합작법인의 지분 매각 및 관세감면 추천서 미발급에 따라 관세감면신청 없이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한 후, 해당 수입물품이 관세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자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이다.

해당 사안에서 ① 외국 현지법인에 소유권이 이전되고 외국 국적으로 등록된 선박을 국내법인이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선박으로 봐 해당 선박이 포획한 이 사건 물품을 내국물품으로 볼 수 있는지, ② 수입신고수리 전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후적으로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고, 이와 더불어 ③ 해외합작법인의 지분을 현지법인 등기사항 확인서로 확인하도록 한 관세감면추천요령의 효력도 문제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 사건 선박이 외국선박에 해당해 해당 선박이 포획한 이 사건 물품도 내국물품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전제로 한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한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수입신고수리 전에 관세감면신청을 해야 하고, 나아가 현지법인 등기사항 확인서를 지분 확인 자료로 정한 관세감면추천요령도 유효해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1) 대법원 2026.4.2. 선고 2025두35929(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확정

2. 처분의 경위

가. 국내 업체의 러시아 합작조업 경위

(1) 1991년경 한국과 러시아의 국교정상화가 이뤄져 한·러 어업협정이 체결된 이후 2001년경까지, 국내 원양어업체는 러시아 수역에서 정부쿼터와 민간쿼터를 확보해 자국 선박(북양트롤선 등)으로 연간 최대 20만톤의 명태를 잡아 국내 수요에 충당했다. 그러던 중 러시아 당국은 어업자원 및 자국어업인 보호를 이유로 외국에 대한 정부쿼터의 경우에는 쿼터량(조업 가능량)을 감축해 조업규제를 강화하고, 민간쿼터의 경우에는 2001년경부터 국제입찰제도로 변경하고 2002년경부터는 자국민 우선 입찰배정으로 전환했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에 배정되는 명태쿼터는 점차 감소하게 됐다.

(2) 이에 따라 원양어업계는 어획할당량 부족을 이유로 정부에 명태어선 감척을 요구했는데, 정부는 예산 사정으로 원양어업계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 없어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국내 업체가 러시아인과 합작한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해 원양어업신고를 하고 해외 현지법인에 출자한 자국 어선을 이용해 생산하는 수산물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관세감면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합작어업 경영을 유도했다.

나. 원고의 원양어업 방식 및 합작법인에 대한 지분 변동

(1) 원고는 수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변경 전 상호: B 주식회사)으로, 해외합작 원양어업을 영위하기 위해 2002.12.11. 러시아인 C와 합작해 러시아 현지법인 D를 설립했는데, D의 설립 당시 그 지분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 50%는 C가 각 보유했다(이하 보유 지분은 '%' 또는 '퍼센트'로 표기함).

(2) 원고는 자신 소유의 선박 'E'(이후 'F'로 선명 변경,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함)를 D에 양도해 D 소유로 선박등록을 마친 다음, 러시아로부터 어업허가 및 명태 조업 쿼터를 할당받은 D가 포획한 수산물인 명태, 대구 등을 국내로 반입했다.

(3) 원고는 2012.8.8. 합작파트너사인 G(C로부터 지분을 양도받은 회사로 보임)와 사이에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D의 지분 50%를 G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지분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원고는 2017.12.27. G로부터 D의 지분 49%를 재취득하면서 매입대금 1,350,000달러를 1년 내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해당 지분에 대한 저당권 및 질권을 설정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분 이전이 무효가 된다는 내용의 지분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D의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의 법인등기부상 지분 변동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일자	지분소유자	지분	금액	B 주식회사 지분 현황
2002.12.15.	<생략>	50%	30만루불	지분 50% 보유
	〃	50%	30만루불	
2004.1.6.	〃	50%	30만루불	
	〃	50%	30만루불	
2006.4.5.	〃	50%	30만루불	
	〃	50%	30만루불	
2006.9.1.	〃	50%	30만루불	
	〃	50%	30만루불	
2007.8.10.	〃	50%	30만루불	
	〃	45%	27만루불	
	〃	5%	3만루불	
2008.4.22.	〃	100%	60만루불	지분 없음
2008.12.5.	〃	100%	60만루불	
2009.5.25.	〃	100%	60만루불	
2011.6.21.	〃	50%	30만루불	지분 50% 보유
	〃	50%	30만루불	
2012.8.17.	〃	100%	60만루불	지분 없음
2015.2.10.	〃	100%	60만루불	
2017.12.19.	〃	100%	60만루불	
2017.12.27.	〃	49%	29.4만루불	지분 49% 보유
	〃	50%	30.6만루불	

다. 이 사건 처분의 경과

(1) 원고는 2013.4.2.부터 2013.5.7.까지 사이에 냉동명태 등(수입신고번호 H 등 19건)을 수입했으나, 위 수산물이 구 「관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6호 및 구 「관세법 시행규칙」 [(2013.7.1.) 기획재정부령 제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6항의 외국인과 합작해 채집 또는 포획한 수산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세를 면제받았다.

(2) 피고는 2017.3.23. 원고에 대한 범칙조사를 실시해 원고가 2012.8.17. G에 원고 소유의 D 지분 50%를 전부 양도함에 따라 위 2012.8.17. 이후에는 합작수산물 관세면제 요건 중 지분 요건(총 지분의 49퍼센트 이상을 확보한 경우)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봐 2018.3.19. 및 2018.3.27. 원고에게 관세 및 가산세 합계 1,776,756,46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함)했다.

(3) 원고는 이 사건 선행 처분에 불복해 2018.5.16. 관세청에 심사를 청구하는 한편, 2018.11.9. 부산지방법원에 2018구합24743호로 이 사건 선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4) 한편, 관세청은 2018.12.27. "원고의 지분 이전 및 취득과 관련된 대금의 영수나 지급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및 원고의 이 사건 물품 수입 기간 동안 「관세법」 제93조 제6호의 관세감면을 받은 국내 원양어업체들의 러시아 합작법인에 대한 지분 보유 현황을 확인해 원고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등을 재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과세가격과 세액을 결정한다"는 결정을 했다.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2019.2.19. 원고에게 이 사건 선행 처분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했고, 원고는 2019.3.8. 및 2019.5.3. 관세청에 이 사건 선행 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를 다시 했다.

(5) 이 사건 선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4743호 사건에서 2020.8.21. 이 사건 선행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선고됐다.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관세청이 위 판결 선고 이후인 2021.3.30. 원고의 2019.3.8.자 및 2019.5.3.자 심사청구를 인용해 이 사건 선행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그에 따라 2021.4.6. 이 사건 선행 처분을 직권 취소했다. 그러자 원고도 2021.4.20. 이 사건 선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취하했다.

(6) 이 사건 선행 처분 대상 물품 외에도, 원고는 2015.11.26.부터 2018.1.22.까지 사이(이하 '쟁점기간'이라 함)에 러시아로부터 수입신고번호 I(2015.11.26.) 등 113건으로 수입한 냉동명태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함)에 대해 관세감면신청 없이 수입신고를 한 후 관세 7,591,833,290원을 납부하고 수입통관했다. 원고는 이 사건 선행 처분이 취소된 이후인 2021.4.29.부터 2021.4.30.에 걸쳐 피고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가 면제돼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2021.6.15. 원고의 경정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원고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했다.

(7) 원고는 2021.9.3. 관세청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했으나, 관세청은 2022.10.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대한민국 선박인 이 사건 선박을 투입해 러시아 경제수역에서 조업한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2조 제5호 나목에 따라 내국물품에 해당해 관세가 면제돼야 한다. 그럼에도 내국물품에 부과된 수입관세를 경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제1주장).

가)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을 D에게 양도한 것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해 무효이거나 무효인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는 여전히 내국법인인 원고여서 이 사건 선박은 「선박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을 D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선박의 대내적, 실질적인 소유자는 원고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선박은 '대한민국 선박'으로 봐야 한다.

2) 설령 쟁점물품이 내국물품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쟁점기간 동안 D 지분의 50%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어 쟁점물품의 수입은 「관세법」 제93조 제6호(이 사건 처분 이후 2025.10.1. 법률 제21065호로 개정됐으나, '기획재정부령'이 '재정경제부령'으로 변경된 것 외에는 실질적인 내용에 차이가 없어 별도로 구법 표시를 하지 않는다)에 따라 당연히 관세가 면제돼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아래와 같이 관계 법령을 잘못 해석하거나 위법한 관계 법령을 근거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보고 쟁점물품에 대해 부과된 수입관세를 경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제2주장).

가)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른 감면신청은 감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필요적 감면 요건으로 보는 것은 모법의 위임이 없음에도 새로운 절차적 감면 요건을 창설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를 필요적 감면 요건으로 보고 원고가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나) 관세감면을 위한 "해외합작요건 중 지분의 확인은 해외현지법인의 법인 등기사항 확인서에 의한다"고 규정한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요령'(2015.3.19.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5-3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관세감면추천요령'이라 한다) 제6조는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과세감면을 위해 해외합작법인의 법인 등기사항 확인서를 제출하고 등기된 '지분'에 따라 합작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지분은 제외되도록 해 관세감면신청권의 행사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했다. 이러한 고시는 대외적인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된 것이어서 무효다. 그럼에도 피고는 무효인 위 고시를 근거로 원고가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않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고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나. 제1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 양도가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3.1.21. D와의 사이에 이 사건 선박을 러시아 국적으로 이전하기 위해 그 소유권을 D에 양도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고, 그에 따라 D가 이 사건 선박에 관한 등록을 마치고 원고가 2003.4.9.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수출신고를 마친 사실, 이 사건 선박의 선박보험증서에도 소유자가 D, 국적이 러시아 국적으로 기재돼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그에 따르면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은 D에 유효하게 양도됐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다만 원고와 D 사이에 작성된 위 합의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의 실질적인 소유자'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돼 있고, D 명의의 선박등록이 마쳐진 이후에도 원고가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선박보험료를 납입하거나 이 사건 선박을 수리하고 그 선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등 대내적인 관계에서 원고가 여전히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와 D는 「관세법」에 따른 관세감면을 받기 위해 이 사건 선박의 국적을 러시아로 변경할 목적으로 그 소유권을 D에 이전한 것이고, 이와 같이 선박의 소유권이 양도된 외관대로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은 명백해 보여,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을 D에 양도한 것을 두고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원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을 D에 이전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그 소유권을 원고에게 유보하기로 하는 취지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하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가 선박에도 적용된다고 볼 만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점, 등기에 의해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부동산과는 달리 선박의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고(「상법」 제743조) 그에 대한 등기·등록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에 불과해 물권변동의 요건과 효력에 있어 차이가 있는 점,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선박에 대해서도 부동산과 같이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봐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을 D에 양도하는 취지의 약정이 무효인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선박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쟁점물품이 내국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은 「관세법」을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6.9.30. 선고 2015두58591 판결 참조). 그러나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해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 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고(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실질과세의 원칙의 주요한 목적이 조세감면의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것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춰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선박이 '외국선박'에 해당함을 전제로 쟁점물품이 내국물품에 해당하지 않아 조세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에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선박을 사용해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을 D에 양도했고, 이 사건 선박은 외국법인인 D 명의로 등록돼 수출신고 등이 이뤄졌다. 이처럼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이 대외적으로 D에 이전된 이상, 이 사건 선박을 외국선박으로 인정하는 데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 형식이나 외관이 존재한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관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원고와 D 사이의 내부적인 합의만으로 특별히 이 사건 선박을 '대한민국 선박'으로 취급해야 할 근거도 없다.

② 원고가 「관세법」상 외국선박 여부를 판단할 때 실질을 중시해야 한다는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1989.4.11. 선고 88도460 판결은 외국국적의 선박이라도 내국인이 나용선하거나 양수해 운용하면서 공해에서 수산물을 포획하는 경우에는 그 주체에 따라 내국물품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해당 선박이 외국선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합작법인인 D가 외국 수역인 러시아 수역에서 외국선박인 이 사건 선박을 사용해 포획한 수산물을 국내로 들여온 이 사건과는 구체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다.

③ 그 밖에 원고가 들고 있는 판례들은 부동산의 양도세, 소득세와 관련한 「부동산실명법」

에 따른 명의신탁에 대한 사안들이어서 「부동산실명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고, 그와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선박이 '대한민국 선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관세를 감면하지 않은 것에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다. 제2주장에 관한 판단

1)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의 관세감면신청이 관세감면을 위한 필요적 요건인지에 관한 판단

가) 「관세법」 제93조 제6호는 관련 요건에 따라 외국인과 합작해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중 해양수산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 추천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관세법」 제38조 제1항 및 제2항, 「관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12조 제1항,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1호는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해야 하고, 위 신고를 할 때에는 해당 물품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세율과 납부해야 할 세액 외에도 관세의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액과 그 법적 근거까지 기재해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특히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수리 전에 관련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세관장은 신고한 세액에 대해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하되,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해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물품에 대한 세액은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심사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이와 같은 각 규정의 문언과 체계 및 취지를 종합하면, 수입물품이 「관세법」에 따른 관세감면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관세청으로서는 해당 물품의 수입에 관한 관세의 감면신청에 따라 감면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일 뿐 그러한 감면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관세가 당연히 감면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95.9.15. 선고 95누6748 판결, 대법원 2009.7.23. 선고 2007두1170 판결 등의 취지 참조).

또한, 관세의 감면 대상 물품에 대한 세액심사가 원칙적으로 수입신고수리 전에 이뤄지는 것을 고려하더라도(「관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1호), 관세를 감면받으려 하는 자는 수입신고수리 전에 관계서류를 첨부해 관세감면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

다) 결국 관세를 감면받기 위해 관세감면신청을 해야 한다고 정한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은 「관세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새로운 관세감면의 요건을 창설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기보다는 「관세법」에 따른 납세신고에 관한 사항 중 하나인 감면에 관한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구체화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이나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원고로서는 쟁점물품에 관해 서류를 첨부해 감면신청을 했어야 할 것이어서, 관세감면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당연히 관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원고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5.12.29. 법률 제5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토지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 감면신청이 필요한지 여부가 문제된 대법원 2003.5.16. 선고 2001두3006 판결 등을 근거로 감면신청이 없어도 당연히 조세가 감면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사안은 「관세법」이 적용되는 이 사건과는 차이가 있어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2) 관세감면 추천요령 제6조가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관련 법령에 따른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관세감면신청을 위해 필요한 절차 및 서류에 관한 관세감면 추천요령이 무효인지 여부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무효인 관세감면 추천요령에 따라 관세감면신청을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선해(善解)해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춰 관세감면 추천요령 제6조가 무효라거나 효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관세법」 제93조 제6호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게 외국인과 합작해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중 해양수산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 추천하는 물품의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해외 합작수산물의 관세감면 요건 중 '외국인과의 합작 요건'의 구체적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6항은 외국인과의 합작 요건을 '총지분의 49퍼센트 이상을 확보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합작수산물 등의 관세감면을 추천하고자 할 때 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관세감면추천요령이 제정됐고, 위 요령 제6조는 해외합작의 합작 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지분'의 기준에 관해 '해외현지법인의 법인 등기사항 확인서'에 따라 그 지분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러한 관세감면 추천요령 제6조는 해외합작 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지분의 판단기준에 관해 '해외직접투자 인증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것을 2015.3.19. 개정을 통해 '해외현지법인의 법인 등기사항 확인서'에 의하도록 그 기준을 변경했는데, 이는 합작관계의 진정성을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하기 위해 외국인과의 합작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과 요건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보이고, 그와 달리 외국인과의 합작 요건 자체를 불리하게 변경해 관세감면을 받으려는 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해 지분의 인정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 이와 같은 각 규정의 문언과 체계 및 취지를 종합하면, 관세감면추천요령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하여금 관세 면제의 대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관세법」과 그 요건을 정한 「관세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구체적인 추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서 효력이 있고, 해외합작의 요건 중 '지분'의 판단기준에 관한 규정 내용 역시 이와 같은 추천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한 것이어서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라.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한 것으로 정당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어

대상 판결은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이 외국법인에 이전되고 그 명의로 선박등록과 수출신고가 이뤄진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사실상 관리·운영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를 대한민국 선박으로 볼 수 없고, 이에 원고가 수입한 물품은 내국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조세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한, 수입물품이 「관세법」상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수입신고수리 전에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관세가 당연히 감면되는 것은 아니라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했으며, 지분관계 확인 자료를 현지법인의 법인 등기사항 확인서로 정한 기준 역시 지분요건을 불리하게 축소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구체화한 유효한 규정으로 판단했다.

결국 이 판결은 실질과세의 원칙이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형평을 제고해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라는 기존 대법원 입장에 더해, 조세감면의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것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수입물품이 관세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감면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관세가 당연히 감면되는 것은 아니라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설탕과자vs.조제 식료품' 설탕 대체제 '소르비톨' 함유 사탕의 HS Code

이 영 주 | 중앙관세분석소



품목분류 사례와 관련 없음

사과나 배, 자두 같은 과일을 한입 베어 물 때 느껴지는 은은하고 청량한 단맛은 자연의 단맛을 내는 성분 중 하나로 바로 '소르비톨(Sorbitol)'이다. 화학적으로는 포도당을 환원시켜 만드는 당알코올의 일종으로 설탕과 비슷한 단맛을 내면서도 칼로리는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충치를 유발하지 않는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식품업계를 휩쓸고 있는 '제로 슈거(Zero Sugar)' 열풍의 핵심 원료로 자리 잡으며 무설탕 껌, 젤리, 사탕 등 우리 일상 깊숙이 스며들었다.

소비자의 관점에서 소르비톨로 만든 사탕은 그저 '살이 덜 찌는 달콤한 간식'일 뿐이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적인 사탕은 설탕을 주성분으로 하기에 통상 '설탕과자(제1704호)'로 분류된다. 그러나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채, 당 알코올인 소르비톨만으로 단맛을 낸 사탕은 어떻게 분류될까?

이번 호에서는 우리에게 친숙한 '사탕'에서 시작해 소르비톨을 주원료로 한 사탕류 제품의 품목분류를 알아보고자 한다.

[세번 정정 이유] 본 물품은 소르비톨(약 98%) 주성분에 DL-사과산,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수크랄로스, 향 등을 혼합해 원형으로 만든 사탕으로 '캔디류'에 해당하는 제1704.90-2090호로 신고했다.

제1704호 해설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 호에는 대부분의 설탕제품을 분류하는데 고체나 반고체 물품으로 시판되고 보통 직접 식용에 적합한 것이며 총칭적으로 사탕과자·과자류나 캔디로 부른다."

허나, 같은 호 해설서 제외규정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d) 단과자(sweets)·검(gum)과 이와 유사한 물품(특히 당뇨병 환자용)으로서 설탕대용으로 **합성감미료[예: 소르비톨(sorbitol)]**를 사용한 것 ; 설탕을 기본 재료로 하는 페이스트(paste)로서 첨가지방분을 상당한 비율로 함유하고 때로는 밀크나 견과류를 포함하며 직접 설탕과자로 변형시키기에 부적합한 물품(제2106호)"

따라서, 소르비톨을 주성분으로 한 본 제품은 제1704호에서 제외되는 물품이다.

제2106호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9) 단과자·껌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특히 당뇨병 환자용의 것)으로서 설탕 대용의 인공감미료(예: 소르비톨)를 함유하는 것"을 예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물품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 봐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정정 분류했다.

신고품명	신고세번(세율)	회보품명	정정세번(세율)
CANDY	제1704.90-2090호 FCN1 0%	Food preparation	제2106.90-9099호 FCN1 0%

일본 세관, 전자상거래 급증에 2030 대전환 추진

소액·다빈도 화물 급증에 기존 통관방식 한계… 국경관리 재설계

전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확대로 소액·다빈도 화물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해외 직구의 확대와 국제범죄의 지능화, 경제안보 위험 증가와 인력 부족까지 겹치면서 기존 세관행정이 변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일본 재무성 관세국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6월 향후 5년간의 세관행정 개혁 방향을 담은 '세관 중장기구상 2030(Smart and Secure Border Control: Customs Vision 2030)'을 발표했다. 이번 호에서는 일본 관세국이 세관행정 전반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 배경을 살펴본다.

6년 만에 5배로 늘어난 수입허가 건수

일본의 수입허가 건수는 2019년 약 4,640만건에서 2025년 약 2억 2,680만건으로 6년 만에 약 5배 증가했다. 일본 관세국은 중국과 한국 등에서 반입되는 기업·소비자 간 거래(B2C) 화물과 소액 수입화물의 확대를 주요 배경으로 들었다. 관세국에 따르면 수입신고 건수 가운데 통신판매화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90%를 넘어섰다.

관세국은 현재의 세관제도가 주로 기업 간 거래(B2B) 화물을 전제로 형성돼 있어 변화한 물류구조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기업 간 무역은 수출입자와 거래관계가 비교적 명확하고 일정 규모의 화물이 반복적으로 이동하는 반면, 국경 간 전자상거래에는 해외 판매자와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송업자, 통관업자, 개인 구매자 등 다수의 당사자가 관여한다.

● 세계 국경 간 전자상거래 거래규모 추이(좌)&수출입신고건수 및 세관정원 추이(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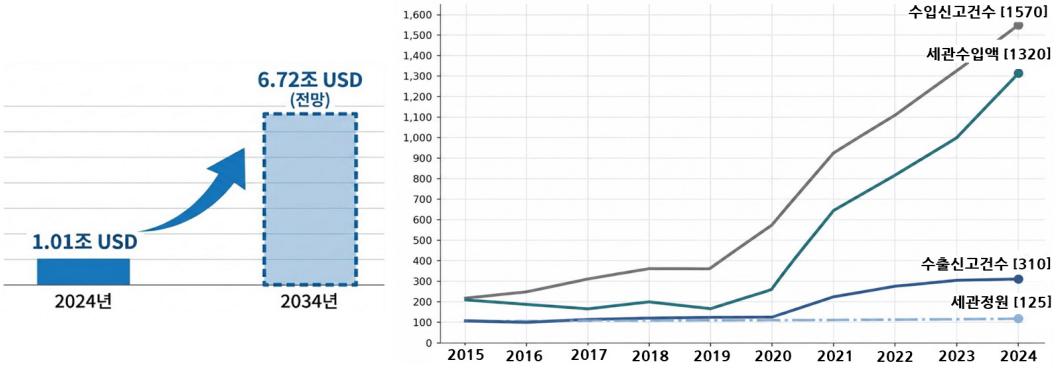

수출입신고건수 및 세관정원 추이는 2002년 실적을 기준(100)으로 상대지수화한 결과다. 2024년 기준 수입신고건수는 15.7배, 세관수입액은 13.2배, 수출신고선수는 3.1배 증가한 반면, 세관 정원은 1.25배 증가에 그쳤다[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2024년도 디지털거래환경 정비사업(전자상거래시장조사)'·일본 재무성, 편집: 주간 관세무역정보]

보세관리와 과세제도에도 새로운 과제가 나타났다. 일본 관세국은 일부 보세업자에게서 수입허가 전 화물의 부적정 반출이나 미신고 물품 반출이 의심되는 사례를 확인했으며, 소액면세제도를 악용한 분할배송과 저가신고 우려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과의 정보연계를 확대하고, 간이세율을 포함한 소액화물 과세체계도 단계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소액화물 증가 틈탄 불법물품 반입··· 통관·검사방식도 한계

국경 간 전자상거래의 확대는 세관의 위험관리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일본 관세국은 불법약물이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개인수입·통신판매 상품으로 위장하거나, 여러 소액화물에 나눠 반입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가령 일본 세관은 헝가리에서 발송된 서로 다른 국제우편물 두 건에서 합성마약 MDMA를 약 749g 적발했다. 이 가운데 약 501g은 도자기 안에 숨겨 국제특급우편(EMS)으로 발송됐다가 오키나와 나하에서 발견됐다. 나머지 248g은 등기우편으로 보내져 가와사키에서 적발됐다. 같은 국가에서 발송한 약물을 서로 다른 시기와 우편물, 반입 지점으로 나눠 보낸 분산형 밀수 사례다.

일본 세관이 2025년 수입단계에서 적발·차단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3만 1,760건으로, 3년 연속 3만건을 넘어섰다. 같은 해 불법약물 압수량은 약 3,211kg으로 전년보다 15% 증가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규모를 기록했다. 국제범죄조직의 형태와 밀수수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일본 관세국은 서로 다른 국적의 구성원이 역할을 분담하거나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SNS를 통해 연락하면서 범죄를 실행하는 등 범죄조직이 다국적·유동적인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밀수수법도 대형화물에 불법물품을 은닉하는 방식에서 통신판매 상품이나 개인수입품으로 위장해 소량으로 나눠 보내는 방식으로 교묘해지고 있다.

● 일본 세관의 불법약물 압수량 및 적발 건수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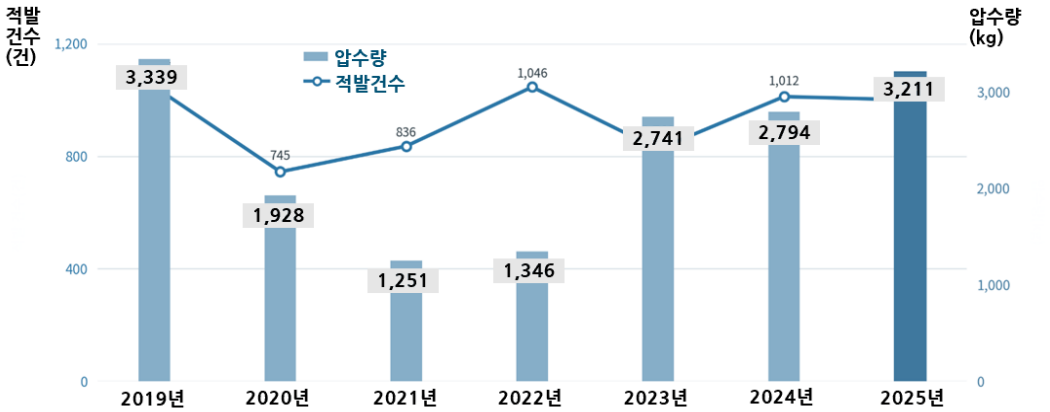

자료: 일본 재무성 관세국(2026), '세관 중장기구상 2030', 편집: 주간 관세무역정보

관세국은 급증하는 화물을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개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사기능을 일정 장소에 집약하고, 화물 도착 전에 확보한 정보와 수입신고자료를 활용해 위험화물을 선별하는 한편, X선 검사영상과 AI를 연계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수입물품에서 수출 자금까지··· 넓어지는 세관 관리영역

일본 관세국은 중국의 희토류 관련 수출통제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등으로 공급망 불확실성과 경제안보 위험이 커지면서 세관의 수출관리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북한·러시아 제재의 이행과 제3국을 통한 우회수출 차단은 물론, 군사 전용 가능 물품과 소비세 부정환급 관련 금·도난 차량·펜타닐 원료 등의 국외 반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출국 여행객이 휴대한 미신고 고액 현금과 범죄수익의 국외 반출 역시 관리대상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수출화물의 위험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관련 서류가 충분히 전자화·집적되지 않아 수출 전 검사와 수출 후 거래내용을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일본 관세국은 관계 기관과 민간사업자로부터 관련 정보를 확보하고 수출서류의 전자적 제출을 확대해 위험분석과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인력·시설 제한으로 기존 방식 넘어 세관행정 개혁

세관의 업무량과 관리 범위는 크게 늘었지만, 인력과 시설 확충에는 한계가 있다. 대형 공항에서는 검사장과 화물처리 공간이 부족해지고 있으며, 지방공항과 크루즈항에도 여행객 신고·검사시설과 인력을 배치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진·태풍·호우 등의 자연재해와 디지털 의존도 증가에 따른 사이버공격 위험도 커지고 있다. 이에 전자통관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일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일본 관세국은 물류구조 변화와 검사 수요 증가, 인력·시설의 제약이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에서 단순한 인력·시설 확충만으로는 신속한 통관과 엄격한 국경단속을 병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존 업무방식의 부분적인 보완이 아니라 검사방식과 정보분석, 시스템, 인력 배치를 아우르는 세관행정 전반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세관 중장기구상 2030'은 개혁 방향을 ▲국경관리 전환, ▲협력관계 전환, ▲AI 기반 디지털 전환, ▲인재·조직 전환 등 4대 변혁 분야로 나눠 제시했다.

다음 호에서는 각 변혁 분야의 구체적인 정책과 이를 통해 달라질 일본의 국경관리·통관행정을 살펴보겠다.

| 강보람 기자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신간 도서안내

2026 개정판
관세법령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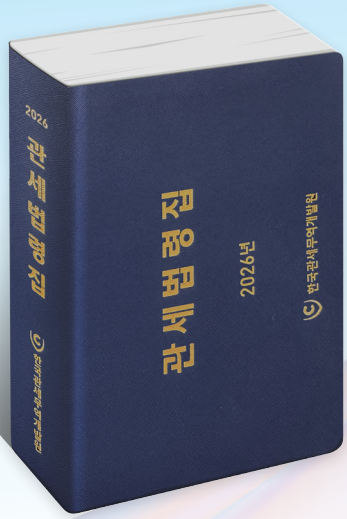

- **관세 행정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수록 법령 개편**
  「행정기본법」·「행정절차법」등 신규 수록
- **2026년 4월 1일까지 최신 개정 법령 반영**
  최신 법조문과 관련 고시·판례 통합 업데이트
- **법령 구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3단 구성**

2026 HS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

관세 · 무역 실무를 위한 가장 확실한 기준



- **2026년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 및 FTA 연차세율 반영**
  - 22개 FTA(CEPA, SECA 포함), WTO 협정 등 반영
  - 한·UAE CEPA, 한·에콰도르 SECA 신규 수록
  - 한·EU, 한·영국 FTA 상·하반기 세율 반영
-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및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사항 수록**
- **통합공고 및 기타세율 규정, 내국세법 등 주요 개정사항 반영**

도서 구매 문의 안내

구매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smartstore.naver.com/kctdi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더욱 다양한 도서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TEL (02)3416-5112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사업실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도서 판매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